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64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8. 28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8. 2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9. 4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○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(2000.1.28 공포, 법률 제6236호)됨에 따라 동 법의 근거에 의거 재정된 고성군중개업분쟁위원회조례는 동법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○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(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조항 폐지에 따른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1994년 7월 11일 상위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나

○ 부동산중개업법을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하면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3(중개계약) 및 동법 제19조의2(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)에 중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설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개 계약제도를 개정법령에 도입하였으며,

○ 개정된 법령에는 부동산 중개 분쟁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법조문에 명문화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(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본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2000. 9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